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31 선고 2022가단5739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언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20. 6.경부터 (주)C 산하의 지역법인인 (주)D의 원주관설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E 등에게 ‘투자자를 회사의 사무실로 데려만 와도 건당 10~3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건당 투자유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2021. 6. 4. 위 회사의 원주관설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주)C의 사업내용과 투자조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원고는 위 회사의 사업내용을 믿기 어렵다며 투자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외제차를 운전한다는 등 형제들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증하겠고 1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강권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2021. 6. 4. 피고가 지정하는 (주)F[(주)C 산하의 계열회사이다]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고, 그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기 2021. 7. 4.에 원금과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주)F 명의의 차용증서와 같은 내용의 피고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무렵 (주)C의 대표이사 겸 (주)F의 대표이사인 ‘H’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위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원고에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 을 제1~4, 6~8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주채무자 (주)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차용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주채무자의 사업내용과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차용원금 1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단지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강제로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퇴사하여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원고와의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보증계약 이행책임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H을 비롯한 (주)F의 임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강행법규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보증행위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의 보증계약도 무효이므로 자신에게 보증계약 이행책임이 없으며, 다만 유사수신행위라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을 뿐인데, 원고로부터 1억원을 유치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익 배분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 자신도 위 회사에게 1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적당한 비율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21. 6. 14. 원고에게 (주)F 명의의 차용증서와 함께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는, 주채무자인 (주)F의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G은행이 제출한 (주)F 및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다가 갑 제4호증, 을 제2~4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21. 2. 17.경부터 2021. 6.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약 8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였고, 원고는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금수신행위의 대가로 건별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로부터의 1억원 차용은 그러한 유사수신행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E에게 투자유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평소 회사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다만, 원고로부터의 자금수신행위 직후에 회사 운영이 중단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의 자금수신행위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법률의 규정은 민법의 채권편 계약법 부분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임의규정'과 반드시 적용하도록 강제되는 '강행규정'으로 구분되고, '강행규정'은 다시 이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과 더 나아가 법률행위의 효력까지도 부정하는 '효력규정'으로 구분된다. 법률의 어느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강행규정 중에서도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는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법률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규정의 연혁과 입법목적, 보호법익,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가치평가, 거래의 상대방 및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의 연혁과 입법목적,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등을 살펴보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수범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데 그칠 뿐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며, 다만 그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을 따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애당초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경우에서 성립하는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보다도 낮은데, 이는 입법자가 유사수신행위의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사기죄의 경우보다 작다고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보다 중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는데, 보다 가벼운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무효로 보는 것은 가치평가의 모순이며 법질서의 체계정당성 요청에 반한다.

유사수신행위 과정에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무조건 무효로 볼 경우, 물론 유사수신행위를 한 채무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원금과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그러한 법해석이 확립될 경우, 오히려 애당초 이자지급약정을 준수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율의 이자 약정을 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채무자가 돈을 차용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한 일련의 차용 및 자금 조성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판단이 가능하다. 물론 대개 채무자는 사전에 기획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지만, 거래상대방인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규모로, 누구누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조성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 사후적인 조사평가 결과 채무자의 일련의 차용 및 자금 조성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고 해서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한다는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는 매우 다양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부터 거래상대방을 현혹하기 위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까지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약정이자율이 과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도 계약내용통제를 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의 법적 성질이나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지만,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위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수긍하거나 파기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9801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37382 판결 참조).

(4)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사임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채무자인 (주)F의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이 아니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지점장 퇴직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피고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장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약속과 변제자력을 믿고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지점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따라서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무효이므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인 (주)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 다음날인 2021.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